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심사규정

2005. 12. 22. 제　　정
2008. 8. 18. 전면개정
2009. 2. 2. 일부개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1. 1. 25. 일부개정
2011. 4. 19. 일부개정
2012. 10. 18. 일부개정
2014. 2. 24. 일부개정
2014. 3. 7. 일부개정
2014. 4. 16. 일부개정
2014. 8. 8. 일부개정
2015. 4. 30. 일부개정
2016. 11. 10. 일부개정
2017. 3. 2. 일부개정
2017. 4. 19. 일부개정
2018. 11. 20. 일부개정
2019. 2.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하 '법과정책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법과정책' 및 '국제법무'(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논문의 범위)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은 법학이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 '법과정책'에는 법학일반과 정책학 관련 논문을 '국제법무'에는 국제법무와 관련된 법학논문을 게재범위로 한다.

② 게재논문은 다음의 범위의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결정을 얻은 논문에 한한다. 다만, 1, 2, 3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과정책연구원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2. 법과정책연구원에서 기고를 청탁한 특별기고 논문
3. 법과정책연구원의 요청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획논문
4. 공인된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의 투고논문
5. 박사학위소지자의 투고논문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7.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자는 법과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 또는 논문투고 자격이 있는 자(위 4, 5, 6호 해당자)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법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5. 4. 30)

8. 판례평석, 자료, 서평 등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대상 투고논문) ① 투고논문은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논문심사 대상은 원고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④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임) ① 심사위원은 법학전공 교수 및 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가운데 편집위원회가 선정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 19)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명을 위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심사위원은 당해 발간되는 학술지에 투고 된 논문 3편을 초과하여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10)

③ 논문제출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6. 11. 10)

④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투고논문의 심사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구성의 논리성 (개정 2016. 11. 10)
4.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 (개정 2012. 10. 18)
5. 연구결과의 의의
6. 문장의 독이성 및 논문의 독창성 (개정 2012. 10. 18)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신설 2010. 1. 19)
9. 연구수준의 향상의 기여도 (신설 2010. 1. 19)
10.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신설 2016. 11. 10)

② 심사위원은 전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각 항목 당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고, 10점에서부터 2점으로 점수화하여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경미한 보완사항만 필요한 경우에는 '게재 가'로 판정하고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8)

〔시행일 2017. 1. 1〕

제6조(심사절차) ① 각 투고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심사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시스템의 심사평가서의 양식에 따라 심사한 후 논문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 11. 20)

③ 〈삭제〉

④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서에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서식 2).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게재가부 또는 보완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별지서식 3).

③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논문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의 경우 이전의 논문심사위원 가운데 1인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의2(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결정된 날로 3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9)(별지서식 4)

제8조(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아래표의 기준에 의해 게재 가, 수정 후 게재로 종합판정을 받은 논문일 지라도 논문심사 결과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9)

<table>
<tr><th>판정여부</th><th>심사위원1</th><th>심사위원2</th><th>심사위원3</th></tr>
<tr><td rowspan="2">게재 가</td><td rowspan="2">게재 가</td><td rowspan="2">게재 가</td><td>게재 가</td></tr>
<tr><td>수정 후 게재</td></tr>
<tr><td rowspan="3">수정 후
게재</td><td>수정 후 게재</td><td>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가</td><td>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td></tr>
<tr><td>게재 가</td><td>게재 가</td><td>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td></tr>
<tr><td>게재 가</td><td>수정 후 게재</td><td>게재 불가</td></tr>
<tr><td rowspan="4">수정 후
재심사</td><td rowspan="3">수정 후 재심사</td><td rowspan="3">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 가</td></tr>
<tr><td>수정 후 게재</td></tr>
<tr><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수정 후 게재</td><td>수정 후 게재</td><td>게재 불가</td></tr>
<tr><td rowspan="4">게재
불가</td><td rowspan="3">게재 불가</td><td rowspan="3">게재 불가</td><td>게재 가</td></tr>
<tr><td>수정 후 게재</td></tr>
<tr><td>수정 후 재심사</td></tr>
<tr><td>게재 불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d>게재 불가</td><td>수정 후 재심사</td></tr>
</table>

제9조(비밀유지의무) 각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0조(논문게재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 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게재 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4조 1항, 2항, 제5조 1항의 10, 11호, 제8조는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는 201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2조 2항 7호는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5조 및 제8조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별지서식2, 별지서식3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8일부터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규정 개정에 따라 '법과정책연구소'를 '법과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개정내용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및 제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6조 제2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의 제8조는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투고논문 심사의뢰서

안녕하십니까?

논문심사를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선생님의 연구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법과정책'(또는 '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의 논문을 첨부된 양식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각 심사논문 별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평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술지의 질적 수준은 선생님의 엄정한 평가에 힘입어 더욱 발전적인 개선이 거듭될 것입니다. 수정의견과 게재 불가 사유는 물론 무수정 게재의 경우에도 논문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를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심사 논문 : 00000000000(논문제목) 등 0 편
2. 심사평가서 제출시한 : 2***년 **월 **일까지

2***. **. **.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장 0 0 0

0 0 0 귀하

논문 심사평가서

논문 제목 :

1. 논문의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항목별 점수
	10	9	8	7	6	5	4	3	2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분석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구성의 논리성										
4.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										
5. 연구결과의 의의										
6. 문장의 독이성 및 논문의 독창성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관련분야에 미칠 파급력										
9. 연구수준 향상의 기여도										
10. 논문유사도 검사결과										
총 점 (합 100점)										

최종판정	게재 가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79-70점)	수정 후 재심사 (69~60점)	게재 불가 (59점 이하)

2. 논문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기여도 평가

평가 항목	전혀없다	미미하다	약간있다	크다	매우크다	관련없음
1. 연구주제의 중요성						
2. 이론적 기여도						
3. 방법론적 기여도						
4. 연구결과의 실용성						

3. 논문에 대한 총평(해당항목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의 질에 대한 평가 : A( ), B( ), C( ), D( )

2. 아래 평가 항목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4.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제목 :
● 심사결과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심사의견 :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국제법무) 제00집 제00호 게재신청논문 심사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 **. **.

심사위원 0 0 0 (인)

법과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